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I. 예비비 지출 현황

- 지출결정액 : 1억 8천 1백만원
- 지출액 : 1억 5천 9백만원
- 이월액 : 해당 없음.
- 불용액 : 2천 2백만원

-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률 12.7%가 발생하였음.

〈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 - ㉢ - ㉣
계		181,104	159,039	159,039		22,065
시·자치구간 소통·통합 협력체계 강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000	4,860	4,860		2,140
선거관리경비	기타부담금	14,519	14,519	14,519		
선거관리경비	기타부담금	159,585	139,660	139,660		19,925

II . 검토의견

1. 조류독감(AI) 가금류 수매

- 행정국은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를 위한 가금류 수매 예산”과 “선거관리 재원확보”를 위해 총 3건에 1억 8천 1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천 9백만원을 지출하고, 2천 2백만원을 불용처리(불용률 12.2%)하였음.
- 2016년 12월 조류독감(AI)의 확산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인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의 닭·오리 등 가금류를 수매하고자 7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80만원을 지출하고, 21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조류독감(AI) 예비비 사용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결장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지출결정 일자	지출일자	잔액 ㉤ ㉥ ㉦
시·자치구간 소통·통합 협력체계강화	7,000	4,860	4,860	0	'17.1.26	'17.2.8	2,140

- 행정국은 조류독감(AI)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주택가 등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가금 사육농가를 자치구별로 일제 조사하고, 사육농가의 동의를 얻어 일괄 수매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임.

□ 수매개요

- 수매기간 : 2017. 1. 12.(목) ~ 1. 20.(금)
- 수매대상 : 자가소비(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오리 등 가금류 단, 실내에서 사육하는 관상용 및 반려용 가금류 제외
- 수매방법 : 자치구별 실태파악 후, 사육농가 동의를 얻어 일괄 수매
 - 닭, 오리 : 서울시에서 예산(예비비) 100%지원
 - 거위, 칠면조, 메추리, 기러기 등 : 자치구 자체 예산 활용 수매

- 다만, 행정국은 2017년 1월 26일 700만원을 지출결정 하고, 2017년 2월 8일 486만원을 지출하여, 지출결정액 대비 210만원 (불용률 30.6%)을 불용처리한 바, 이는 실소요 예산에 대한 철저한 예산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비비를 과다하게 지출결정한 것으로, 행정국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예비비의 효율적 집행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자치구와의 협력사업을 통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거나 자치구가 자체 재원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7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할 필요가 있었는지 사유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 행정국은 2016년 12월 당시 조류독감의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법령(「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근거하여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로 사용했다고 밝힘.

2. 서울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리비용 및 후보자 보전비용

- 2017년 상반기(2017.5.9.(수))에 실시한 구로 제3선거구 보궐선거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사유 2017년 3월 16일 확정) 선거관리비용(준비·실시경비) 지급을 위해 1,450만원을 예비비지출결정하여, 34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을 불용시킴.
- 또한, 2017년 구로 제3선거구의 후보자 보전비용 지출을 위하여 기존에 납부한 준비 및 실시경비의 집행잔액을 후보자 보전비용으로 충당(1,100만원)하고 부족금액인 1억 7천만원을 예비비 지출결정하여, 이 중 1억 5천 9백만원을 지출하고, 1천 1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2017년 시의원 보궐선거 개요〉

구 분	구로구 제3선거구
선 거 일	2017.5.9.(수)
확 정 사 유 (확 정 시 기)	사 직 ('17.3.16)
선 거 인 수	122,862명
후 보 자 수	4명

※ '17.4.9까지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4항 :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예비비 사용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준비·실시경비 (구로3선거구)	후보자보전비용 (구로3선거구)
승 인 액	185,183	14,519	170,664
집 행 액	163,025	3,440	159,585
집 행 잔 액	11,079	0	11,079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준비·실시경비(구로3선거구)집행현황〉

(단위 :천원)

성 질 별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집행잔액 사유
합 계		14,519	2,480	11,079			
선거관리일반	당선증및카버제작비	22	-	22	'17. 3. 29	'17. 3. 31	
선거운동관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	3,750	-	1,620			후보자중 1명만 점 자형 선거공보 작 성으로 집행잔액 발생
투 표 관 리	투표용지인쇄비	8,103	2,480	5,623			인쇄단가가 예상보다 낮아 집행잔액 발생
감 시 단 속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상자금	2,500	-	2,500			포상금 미지급으로 집행잔액발생
예 비 경 비	예 비 경 비	144	-	144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보전비용(구로3선거구)집행현황>

(단위:천원)

선거구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비고
구로제3선거구	170,664	159,585	11,079	'17.6.20	'17.6.26	◦ 후보자수 : 4명 - 100% 보전 3, 50%보전 1

- 행정국의 예비비 지출은 보궐선거 실시사유(시의원 사직('17.3.16),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 후 후보자 득표수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확정 등으로 인해 市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선거관리 경비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구로 제3선거구 보궐선거 준비·실시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규칙」 및 「중앙선관위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보궐선거 실시 후 선거비용 보전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2조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의 부담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 ※ 다만, 선거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가 선거보전비용을 청구하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 후보자가 청구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요청을 하고 그 비용을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공직선거관리규칙」 제7조).
 -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요청한 선거보전비용을 심사하여 보전비용 결정 후 60일 이내에 시와 정산하도록 규정(「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제2항) 하고 있음.

- 현재 제도하에서는 서울시의 실소요 예비비 지출결정을 어렵게 하는바, 향후 행정국은 선거관련 예비비지출시 선거관련 규정 개정 건의 등 실소요예산 집행을 위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관련 법령 참고 2 참조).

【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기준(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

② 2017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관리경비 예비비지출요구서 사본

예비비 지출요구서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예산 잔액	예비비 승인액	예비비 승인후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 고객 감동 행정 구현	시민 참여 강화	선거 관리 경비	자 단 이 전 등 (308)	기 타 부 담 금 (11)	0	0	0	0	14,519	14,519

○ 예비비 지출 사유

- 2017년 회계연도 예산 확정 후 발생된 사안 등의 제경비
-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17. 3. 16. 확정되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되며, 市선관위에 '17. 3. 31.까지 납부해야 함

2017년 3월

행정국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③ 2016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보궐선거(구로구제3선거구) 예비비 지출 요구서 사본

예비비 지출요구서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예산 잔액	예비비 승인액	예비비 승인후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 고객 감동 행정 구현	시민 참여 강화	선거 관리 경비	자 치 단 이 전 등 (308)	기 타 부 담 금 (11)	0	14,519	14,519	0	159,585	159,585

○ 예비비 지출 사유

- 2017년 회계연도 예산 확정 후 발생한 사안 등의 제경비
 -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 후 후보자 득표수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액이 결정되기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
 - 법정기한인 '17.7.18(선거일 후 70일)까지 후보자에게 보전해야 하므로 예비비 사용 불가피
- ※ 후보자 보전비용 市선관위 납부 기한 : '17.6.8(선거일부터 30일까지)

2017년 6월

행정국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참고 자료 2

선거비용 보전 관련 법령 등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등)

① 정당 또는 후보자는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별표 1의2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선거일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내역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②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을 검산 및 조사하여 선거일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이내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보전비용"이라 함은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는 비용을 말한다.
7. "경비부담단체"라 함은 지방선거경비를 부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의회의원(이하 "시·도의회의원"이라 한다) 및 시·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를,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의원(이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라 한다)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이하 "자치구·시·군의 장"이라 한다)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자치구·시·군을 말한다.

제7조(납부기한)

3. 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경비. 이 경우 제3조(부담범위)제1호·제2호·제8호 및 제9호 경비의 집행잔액이 있어 같은조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경비의 일부를 총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족액만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부터 30일까지

제8조(추가납부)

- ① 시·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경비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안에 당해위원회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이를 납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